'16년 4월 1일 보험계약(책임개시)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
구분		현행	개정
렌트비 (대물배상)	이용업체	무등록 렌트카업체도 이용	관련법령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)상 해당 지자체에 **등록된 렌트카 업체**로 한정
	제공차량	동종의 렌트차량 제공	피해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**동급차량** 중 **최저요금**주1)의 렌트차량 제공 (예시) BMW520, 벤츠C200, 아우디A4 → 소나타, K5, SM5 등 단, **운행연한 초과**주2)로 동급차량이 없을 경우 **동일규모**주3) 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 제공 (예시) 벤츠S500, BMW7, 에쿠스, K9 → 그랜져, K7, SM7 등
	렌트기간	렌트기간 기산점 : 없음 제공기간 : 수리완료시까지 (30일 한도)	렌트기간 기산점 : 피해차량을 **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** 제공기간 : 수리완료시까지 (30일 한도) 단, **부당한 수리지연** 및 **출고지연**은 **보상에서 제외**
미수선수리비 (자기차량손해)		실제 수리비 또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	단독사고, 가해자 불명사고, 일방 과실사고는 **실제 수리한 경우**에 한하여 **수리비 지급**

주1) 특정 렌트카업체의 특정차량모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동급차량 중 렌트비용이 가장 저렴한 차량그룹을 의미합니다. (예시 : 소나타, K5, SM5 등)

주2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[별표2]에 따라 렌트차량(승용)의 경우 중형이하는 5년, 대형은 8년으로 운행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사고당시 피해차량의 연식이 일정연한을 초과한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주3)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[별표1]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규모별 구분으로 경형(1,000cc미만) · 소형(1,600cc미만) · 중형(2,000cc미만) · 대형(2,000cc이상)으로 구분됩니다.

※ 상세한 내용은 사고발생 시 담당 보상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'16년 7월 1일 보험계약(책임개시)부터 자동차 범퍼의 경미한 손상[주1]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리합니다.

구분	경미한 손상			기타 손상
손상형태	경미손상 제 1 유형	경미손상 제 2 유형	경미손상 제 3 유형	범퍼의 일부분이 찢어진 손상, 함몰된 손상, 범퍼에 구멍이 생긴 상태 등
	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	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	긁힘,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 (구멍 뚫림 없음)	기타 기존 파손으로 복원수리 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경미손상 수리기준	**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 시행** 다만, 경미한 손상이라도 범퍼 내부의 브라켓, 레일 등의 부속품이 파손 된 경우에는 부품교체 가능			**부품 교체를 통한 복원수리 가능** 단, 정비업체가 하자 없이 수리가 가능 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소유자가 원할 경우,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

주1)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의미합니다.

※ 자동차 범퍼의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 홈페이지(http://www.kart.or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